

##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559호

### 장성군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 해제) 결정

전라남도 장성군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)을 『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』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.

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장성군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(<http://luris.molit.go.kr>)에서도 열람이 가능함

2013.10. 4.

국토교통부장관

#### 다 음

1. 장성군관리계획 변경(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) 결정조서 : 붙임
2. 위 변경 결정도면 : 생략
3. 위 변경 지형도면 : 생략

[붙임]

## 장성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

### □ 개발제한구역 변경(일부 해제)

구분	구역명	위 치	면 적 (km <sup>2</sup> 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증·감	
변경	개발 제한구역	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덕성리·녹 진리 일원	82.286956	81.764630	감)0.522326	

### □ 변경사유

- 「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」을 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함

### □ 장성군관리계획 변경 총괄도·결정도·지형도면 : 생략

#### ※ 참고사항

군관리계획 변경 총괄도(1/25,000), 결정도(1/5,000) 및 지형도면은 장성군청에 비치,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